

서울지방법원

제 2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0고합1071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000고합1183(병합)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 최열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2.가. 지은희 여성단체연합대표

3.가. 박원순 참여연대사무처장
 주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9 한양아파트 32동 505호
 본적 경남 창원군 상마면 장가리 1088

4.가. 장원 녹색연합사무총장

5.가. 정대화 교수

6.가. 김기식

참여연대정 께실장

7.가.나. 김혜정

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김 사 홍순보

변 호 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송서

변호사 함성호

법무법인 한걸 담당변호사 차병직, 백승현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각 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 최일, 지은희, 박원순, 장원율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정대화, 김기식, 김
혜정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최열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같은 지은희는 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같은 박원순은 변호사 겸 참여연대 사무처장, 같은 장원은 내전대학교 교수 겸 녹색연합 사무총장, 같은 정대화는 상지대학교 교수 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같은 김기식은 참여연대 정책실장, 같은 김혜정은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피고인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오다가 평소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이 외환 위기를 불러오는 등 국가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1999. 9.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제15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정치발전에 기여하려 하였으나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 방청거부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자, 1999. 12. 17.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걸스카웃 드 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1개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총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사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당선되지 못하도록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치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의견을 모아 '2000년 총선시민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뒤 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2000. 1. 7.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공정선거감시운동만으로는 정치개혁에 한계가 있으므로 낙천·낙선운동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참석단체들로부터 전국 단일의 낙선운동 연대체를 발족시키기로 합의를 도출한 다음 2000. 1. 12. 전국적으로 412개 단체가 참여하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라 한다)'를 공식적으로 발족시킨 후, 같은 최열, 같은 지은희는 각 상임공동대표, 같은 박원순은 상임공동집행위원장, 같은 장원은 상임공동집행위원장 겸 대변인, 같은 정대화는 대변인,

같은 김기식, 같은 김해정은 공동사무처장직을 맡아 수행하면서 박상증, 이남주, 김정현, 남인순, 김태호, 김타관 등 총선연대 간부들과 함께 낙천·낙선운동을 조직적이고 순차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도화를 배부·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00. 1. 24. 총선연대 명의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예정인 제15대 선·현직 국회의원 중 부패행위·선거법위반·민주헌정질서파괴·외경활동불성실·자질부족·법안에 대한 태도 등을 기준으로 국창군을 비롯한 공천반대인사 66명을 선정하여 발표한 뒤 그 명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총선연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천반대인사 명단과 행사개최 사실을 홍보한 다음,

2000. 1. 30. 12:50부터 14: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제1차 시민행동 국민주권 선언』

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화성장치가 설치된 연단 주변에 “퇴장! 부패정치, 퇴장! 낡은 정치, 2000년 총선시민연대 국민이 보내는 공천반대 - 옐로우 카드”라는 문구가 표시된 현수막 4개를 게시하고, 집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집회참석자들에게 “공천반대”라고 기재된 옐로우 카드(Yellow Card)를 나누어 주고, “2000년 총선을 낡은 정치 심판장으로! 국민주권의 축제로!”라는 부제가 달린 유권자행동선언문과 그 이면에 “부패 부능 불성실 정치인의 공천을 반대합니다. 총선연대가 선정한 공천반대인사 66명의 공천에 반대하는 전화와 원지를 각 정당 공천심사위에 보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권자행동지침이 게재된 유인물을 집회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공천반대인사로 선정된 66명의 명단과 위와 같은 유권자행동지침 등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주간지 ‘시민의 신문’을 호외로 인쇄하여 집회현장에 쌓아 두고 이를 집회참석자들에게 배부하고, 행사장 곳곳에 서명대와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지지와 선거법 제87조 폐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고, 피고인 최원이 인사말을 통해 공천반대인사로 발표한 김종필 의원의 정세은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같은 날 14:10부터 15:00경까지 위 집회 참석자 및 행인들과 함께 부리를 지어 서울역광장에서 명동성당까지 “공천반대” 옐로우 카드와 “부패정치인 퇴출” 등의 구호가 기재된 피켓 등을 휴대하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부패인사 공천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같은 날 15:15경 명동성당 입구에서 같은 박원순이 위 유권자행동지침을 낭독하고 낡은 정치인을 국회에서 몰아내자는 취지의 낙선운동 지지연설을 하여 집회를 마무리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들은 전향과 같이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예정인 제15대 국회의원 중

공천반대인사 66명을 1차로 선정하여 발표한 데에 이어 같은 해 2. 2. 같은 기준에 따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김길홍을 비롯한 공천반대인사 47명을 2차로 선정하여 발표된 때마침 선언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이용하여 낙천·낙선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계획하고,

2000. 2. 3. 11:00부터 17:00경까지 서울역 북측광장 철도박물관 앞에서 서명대 4개와 그 주변에 “낙천·낙선운동 지지와 선거법 개정 범국민서명운동”이라는 현수막 1개를 설치하고, 피고인 최열 등이 불특정 다수의 귀성객들에게 총선연대가 선정한 공천반대인사들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이 기재된 ‘옐로우 카드’, ‘유권자행동지침’, ‘유권자행동선언문’, ‘고향을 찾는 시민여러분께’라는 유인물 등을 나누어 주고, 동인들로부터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3. 피고인들은 총선연대 명의로 귀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천반대인사 113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여야 정당으로부터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자로 공천을 받게 되자 이들의 공천을 철회시키고 나아가 선거기간 중에 이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본격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가두서명운동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2000. 2. 24. 13:00부터 14: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YMCA 앞에서 『밀실공천 철회 및 범국민서명운동』 행사를 개최하면서, 총선연대 관계자들이 “밀실공천 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공천무효화를 위한 소송원고인단을 모집합니다. 김종위(한나라당, 강동울)/ 이종찬(새천년민주당, 종로)/ 정대철(새천년민주당, 종구)/ 노승우

(자민련, 동대문갑)/ 박성범(한나라당, 중구)/ 손세일(새천년민주당, 은평갑)/ 이길범(자민련, 용산) 2000년 총선시민연대"라는 문구가 표시된 현수막을 행사장에 게시하고, 행사장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서명용지를 비치한 후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는 꼭 부표를 합니다. 나는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하는 낙선후보를 찍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용지에 '유권자약속 서명'을 받고, 유권자 행동지침이 게재된 시민의신문사 발행의 '총선연대소식지'를 집회현장에 쌓아 두고 이를 집회참석자들에게 배부하고, "아웁! 부패인사, 끝내! 돈정치, 유권자 심판! 끝내! 지역감정"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휴대하고, "이제는 바꿀거야! 해피데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를 행인들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표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4. 피고인들은 여야 정당이 공천작업을 완료하고 후보자 등록을 마쳐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자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입후보자들 가운데 공천반대인사 선정기준과 비슷한 기준에 따라 김종위를 비롯한 낙선운동대상자 86명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다시 이중찬을 비롯한 집중낙선운동대상자 22명을 선정하여 이들을 모두 낙선시키기로 계획하고,

2000. 4. 3. 11:00부터 12:0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정동이벤트홀에서 【2000년 4·13총선 낙선대상자 명단발표 기자회견】 행사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장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같은 지은희가 낙선운동대상자 86명과 집중낙선운동대상자 22명을 발표하고 행사참석자 1,000여명에게 "나는 총선연대가 선정하는 낙선후보를 찍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비롯한 4개항의 유권자 약속이 기재된 레드카드(Red Card)를 나누어 주고, 행사 진행중에 위 레드카드를 흔들게 하여 낙선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진 다음, 같은 날 12:20부터 13:15경까지 위 발표현장에서 명동성당 입구까지 500여명이 무리를 지

어 거리를 행진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좋은 세상 바꾸자, 썩은 정치를 바꾸자, 부패정치, 추방! 지역감정” 등의 문구가 표시된 플래카드를 들고 위와 같은 유권자 약속이 기재된 레드카드를 흔들며 차량 4대와 휴대용 화성장치를 사용하여 “총선시민연대 앞장서서 부패정치인 낙선시키자, 총선시민연대 앞장서서 부패정치인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같은 날 13:15경 명동성당 앞에 도착하여서는 피고인 김혜정이 화성장치를 사용하여 사회를 보면서 시민들에게 총선연대가 선정한 86명의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 뒤 행사를 마쳐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연설회 등을 개최하고,

5. 피고인들은 선거일이 임박하여 오자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여 낙선운동의 열기를 고조시켜 선거일까지 이어가고 나아가 지방에까지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운동대상자들의 낙선을 높이기로 계획하고,

2000. 4. 8. 12:00부터 22:45경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마로니에공원에서 【4·13 테스터빌 희망만들기】 행사를 개최하면서, 연단 주변에 “RED 2000 FESTIVAL”, “퇴장! 부패정치, 퇴장! 낡은 정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나는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후보를 뽑지 않습니다”라는 유권자 약속이 기재된 서명용지에 참석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새겨진 ‘유권자 약속카드’와 “이젠 바뀔시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레드카드(Red Card) 및 낙선운동 대상자 86명의 사진과 출마지역구 등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총선시민연대’라는 재하의 주간지 ‘시민의 신문’을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회자 등이 화성장치를 사용하여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썩은 정치 부패 정치 청산”, “나쁜 놈들 정치판에서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서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

게 하여 연설회 등을 개최하고,

6. 선거기간이 개시되자 총선연대가 낙선운동대상자로 선정한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
후히 집중낙선운동대상자가 출마한 22개 지역에서의 낙선운동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총선연대 간부들에게 수도권외 집중낙선운동지역을 할당하여 낙선운동을 전담하게 하
는 한편 지방의 집중낙선운동지역을 순회하면서 낙선운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게 하여
이를 통해 주변지역에도 낙선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계획하고,

2000. 4. 4. 13:00 피고인 박원순은 총선연대로부터 집중낙선운동대상자로 선정된 한나
다당 김승원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 내에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종합상가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한 가운데 "퇴출 반민주정치"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바닥 무패정치, 퇴출 무능정치, 추방 지역감정"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 등
을 흔들며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대상후보를 반드시 낙선시켜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취지로 연설하고, "나는 총선연대가 선정하는 낙선후보를 찍지
않습니다"라는 유권자 약속이 기재된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
수인을 모이게 하여 연설회 등을 개최하고,

7. 피고인 김해정은,

누구든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이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2000. 3. 8. 13:20부터 13: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의 1 소
재 탑골공원 앞 노상에서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선시민연대 회원
10여명과 함께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예정이던 김종필, 김윤환,
김광원 등 3인이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김종철, 김윤환, 김광일의 대의
을 청토 위에 놓고 곧장으로 내려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남인순, 이태호, 김타관, 김민영, 안진철, 박상증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

진술기재

1. 변재중, 이학영, 박진섭, 정보주, 하정우, 정종근, 이기동, 배이기, 임낙평, 한경선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남인순, 이태호, 김타관, 김민영, 안진철, 노경섭, 안재홍, 김복운, 박순조, 권수익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준철, 김영수, 전태우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전대환, 김영민, 권세경, 최병두, 박진섭, 임낙평, 정찬용, 김강일, 배이기, 한경선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권수익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서석홍, 노은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약칭한다) 제256조 제2항 제1호

북, 제90조(판시 각 시설물설치등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 각 공선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판시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면
의 배부·제시등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 각 공선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판시 각 서명·날인운동금지위반의 점,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00. 1. 30.자 행렬등금지위반 및 표지물등휴대금지위반의 점(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행렬등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선범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00. 4. 3.자 행렬등금지위반, 표지물등휴대금지위반, 확장장치사용제한위반, 자동차등사용제한위반의 점(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행렬등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선범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0. 4. 3.자 행렬등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선범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5.의정 유지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민불복종행위로서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위헌법률에 대한 시민불복종행위로서 정당행위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에 적용되는 공선범의 각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들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한 나라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허용범위와 그에 대한 처벌 등의 문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선거문화 및 국민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입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입법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방법의 정당성),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그치게 하여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기본권의 제한이 의도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유용성과 그 제한에 의하여 야기되는 국민적·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양자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법익의 균형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살펴건대, 현행 공선법은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의 청원에 영향을 받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개정된 것으로 시민단체 등의 낙천·낙선운동은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이를 허용하되, 다만 집회와 서명운동, 행렬, 확장장지의 사용, 불법유인물의 배포 등의 방법에 의한 것은 후보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제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가 유권자의 선택에 참고가 될 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표시하는 것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며, 다만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몇몇 구체적인 행위 등으로 나아가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후보자 및 그 관계자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 모두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국회가 고비용·저효율의 선거풍토를 개선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입법사가 위에서 살핀 과잉금

지의 원칙에 위배한 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2조 소정의 긴급피난 행위여서 피고인들을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먼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을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관시 각 행위들의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일부 정당성이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001. 7. 12.

재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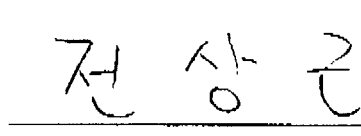
판사

김용현



판사

전상근



판사

이승형

